

#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26년 4월 28일(화)  
운영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6년 3월 23일, 진선아 의원 등 9명(의안번호581호)

나. 회부일자: 2026년 4월 7일

다. 상정일자: 제31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

**【2026년 4월 20일 상정·원안가결】**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진선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공무원 여비규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공무원의 출장 여비 부정 수령이 발생할 경우 환수 및 가산징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여비 집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금액 및 부정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징수금 부과 규정(안 제4조)
- 미납 시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강제이행 절차 규정 마련(안 제4조)
- 자치법규 순화 및 자구 정비

**다. 참고사항**

- 관계법령 : 「국가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,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사전협의 : 의회사무국
- 입법예고 : 2026. 3. 27.~2026. 4. 2.(의견없음)

**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신정경)**

**가. 국민권익위원회 개선방안 핵심 요점 반영**

국민권익위원회 개선방안 핵심 요점

**□ 지방의회 공무원 여비(출장비) 부정수령 방지**

- 실비 정산 원칙 준수: 운임과 숙박비를 정액이 아닌 증거 서류에 의한 실비 정산 방식으로 정산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
- 가산징수 범위 적정화: 여비 부정 수령 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산징수 금액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'부정 수령액의 5배'로 명확히 규정  
· 일부 자치구의 2배(미흡) 또는 10배(과도) 규정을 5배로 통일하도록 권고

**○ 여비 부정 수령 가산징수 규정의 명확화(안 제4조제1항)**

변경전	변경후
<p>제4조(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)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</li> <li>2.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</li> </ol>	<p>제4조(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)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(부정 수령액을 말한다)과 가산징수금액(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)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장을 신청하여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</li> </ol>

<p>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<b>상당액</b>으로 하며,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<b>상당액</b>으로 한다.</p>	<p>2.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경우</p>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기존 “부정 수령액의 5배 상당액<sup>1)</sup>” 등 불분명했던 표현을 환수금액(부정 수령액)과 가산징수금액(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)으로 확정하여 고지하도록 수정함.
-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8조의8에 따른 5배 가산징수 원칙을 충실히 반영함. 이는 타 자치구(영등포구 2배, 종로구 10배 등)의 부적정 사례를 개선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로 판단됨.

○ 미납 시 강제이행 절차 마련(안 제4조제2~3항)

<p>② 임용권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 및 가산징수 금액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 징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이 납부기한까지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「지방재정법」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채권의 보전 및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
--

- 환수금 및 가산징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채권 보전 및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.
- 부정 수령액에 대한 실질적인 환수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로서, 단순한 권고를 넘어 행정의 강제력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입법적 완성도가 높음.

1) 상당액의 사전적 의미: ① 어지간히 많은 금액의 뜻으로 생각보다 꽤 많다는 주관적인 느낌을 포함. ② 일정한 기준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준에 맞먹는 정도를 뜻함. 5배 상당액이라고 하면 5배와 비슷한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음. 여비 부정 수령액은 정확한 금액 산출이 가능하므로 예외없는 확정금액으로 고시

○ 자치법규 순화 및 자구 정비

개정 조항	정비대상 조문	법제처 권고안
제3조	준용함에 있어서	준용할 때에
제3조제6호	~규정은	~는

나.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, 상위 법령과의 충돌을 해소하며,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충분함
- 특히 부정 수령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강제 환수 근거를 마련한 점은 공직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고**

**5. 토론요지 : 회의록 참고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소수의견 요지: 없음**

**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.**

#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26년 4월 28일(화)  
운영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6년 3월 23일, 권영애 의원 등 13명(의안번호582호)

나. 회부일자: 2026년 4월 7일

다. 상정일자: 제31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

**【2026년 4월 20일 상정·원안가결】**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권영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
- 자격증 가산점 부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인사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 제고
-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 반영

나. 주요내용

-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범위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하도록 규정 명확화(안 제6조)
- 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등 관련 규정에 맞게 18세 이상으로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함(안 제9조)
-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기준을 정비하고, 가산점 비율을 별도로 고시 또는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5조)

- 법령 인용 방식 및 띄어쓰기 등 조문 표현을 정비하고 별지 서식 표기를 통일함(안 제4조, 제6조, 제10조, 제11조, 제16조, 제20조, 제23조, 제34조, 제38조, 제40조)

#### 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, 「공무원 임용 시험령」,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
-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- 사전협의 : 의회사무국
- 입법예고 : 2026. 3. 27.~2026. 4. 2.(의견없음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신정경)

#### 가.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 핵심

##### 1) 핵심 문제점: 불명확한 재량권

- 재량권 남용 우려: 전문경력관 신규 임용 시, 가산 대상 자격증과 가산 비율을 임용권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인사권 남용 및 채용 비리 발생 가능성 높음.
- 예측 가능성 저해: 규칙 본문에서 정한 자격증 외에 어떤 자격증이 추가될지, 가산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가 불분명하여 응시자가 미리 준비하거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.

##### 2) 개선권고 사항

- 특전 문구 삭제: 임용권자가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 자체를 삭제하여 상위법(지방공무원 임용령)에 부합하도록 조례 개정.
- 공고·고시 의무화: 재량을 유지하더라도, 가산 대상 자격증과 비율을 사전에 '고시' 또는 '공고'방식으로 명확하게 공개하여 인사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하도록 규정.

## 나. 주요 내용

### 1) 응시연령 기준의 단일화(안 제9조)

변경 전	변경 후
<p>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.</p> <p>1. 7급 이상 : 20세 이상 2. 8급 이하 : 18세 이상</p>	<p>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<b>18세 이상</b>이어야 한다.</p> <p>1. 삭제 2. 삭제</p>

- 내용: 기존 7급 이상(20세 이상), 8급 이하(18세 이상)로 구분되던 응시연령을 연령 구분 없이 **18세 이상**으로 통일함.
- 검토의견: 상위 법령인 「공무원 임용 시험령」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, 하위 규칙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적절한 조치임.

### 2) 전문경력관 채용 가산점 투명성 강화(안 제15조)

변경 전	변경 후
<p>① 「국가기술자격법」,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(연구사·지도사를 포함한다) 공무원신규임용시험(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3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.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</p>	<p>① 「국가기술자격법」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(연구사·지도사를 포함한다) 공무원신규임용시험(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하며, 별표 3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<b>별표 4</b>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.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</p>

<p>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. 다만,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(필기시험에 한하며,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)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.</p>	<p>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. 다만, 임용권자가 <b>별도로 추가하여 고시(또는 공고)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</b>(필기시험에 한하며,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) <b>가산하는 점수의 비율은</b>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<b>정하여 고시(또는 공고)한다.</b></p>
---	--

- 내용: 전문경력관 신규임용 시 임용권자가 임의로 정하던 자격증 가산점 부여 기준을 별도로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명문화함.
- 검토의견
  - 국민권익위원회의 '지방의회 채용 공정성 강화' 권고를 충실히 반영함
  - 기존의 "임용권자가 정하는" 식의 포괄적 재량권은 채용 비리나 특혜 시비를 유발할 수 있었으나, 이를 사전 공고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인사 행정의 공개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함.

### 3) 시험 범위 및 제출서류 명확화(안 제6조)

변경전	변경후
<p>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(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하며,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.</p>	<p>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(<b>경력경쟁임용 시험을 포함한다.</b> 이하 같다) -----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----- ----- -----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-----.</p>

- 내용: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범위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.
- 검토의견: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됨.

#### 4)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및 서식 통일

개정 조항	정비대상 조문	법제처 권고안
제4조제2항 제11조 제23조제1항	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~의 규정에 따른	제1항에도 불구하고 ~에 따른
제6조제1항 제11조 제16조제3항 제38조제1항	~하고자 하는	~하려는
제10조제2항,3항 제11조 제14조 제20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40조제3항	기타 6월 당해 ~일로부터 ~ 의거	그 밖에 6개월 해당 ~부터 ~ 따라

- 환수금 및 가산징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채권 보전 및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
- 부정 수령액에 대한 실질적인 환수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로서, 단순한 권고를 넘어 행정의 강제력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입법적 완성도가 높음.

#### 나.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변화에 발맞추고,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지가 돋보임.
  - 특히, 전문경력관 채용 시 가산점 기준을 임의로 정하지 못하게 하고 사전에 공개하도록 한 점은 의회 인사의 공정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.
  - 또한 18세로 응시연령을 낮춘 것은 청년 세대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.
  - 따라서 본 규칙안은 관계 법령과의 충돌이 없으며,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고
5. 토론요지 : 회의록 참고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소수의견 요지: 회의록 참고
8. 기타 필요한 사항: 회의록 참고

#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26년 4월 28일(화)  
운영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6년 3월 23일, 강수진 의원 등 20명(의안번호583호)

나. 회부일자: 2026년 4월 7일

다. 상정일자: 제31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

**【2026년 4월 20일 상정·원안가결】**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강수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「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」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회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규정 신설(안 제44조의2)
- 영상회의록 공개기준과 공개대상 규정 신설(안 제44조의3)
-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본어 투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- 사전협의 : 의회사무국
- 입법예고 : 2026. 3. 30.~2026. 4. 3.(의견없음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신정경)

가. 주요 내용

1) 정보통신망을 통한 실시간 중계 (안 제44조의2 신설)

안 제44조의2
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의 의사를 의회 누리집 등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다.
② 중계는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(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에서의 회의에 한정한다)를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비공개 회의는 제외한다.

- 중계 근거: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의회 누리집 등을 통해 의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마련
- 대상 범위: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를 대상으로 하되, 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으로 한정하며 비공개 회의는 제외

2)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(안 제44조의3 신설)

안 제44조의3
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(이하 "영상회의록"이라 한다)을 의회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항은 공개하지 않고,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② 영상회의록의 공개는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.

- 공개 기한: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(영상회의록)을 공개해야 함.

- 비공개 범위: 정회 등 의사진행과 관련 없는 시간이나 기존 회의록 비공개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.

### 3) 알기 쉬운 법령 정비 (안 제4조제2항 등)

개정 조항	정비대상 조문	법제처 권고안
제4조제2항	부의된	(회의에) 부친
제6조제1항	부의안건	제출안건
제6조제2항	~에 있어서	~할 때
제6조제3항	긴급을 요한다고	긴급하다고
제9조제2항	~하는 때	~할 때
제11조제1항	의결을 얻어	의결을 거쳐
제12조제2항	없는 한	없으면
제18조제1항	동의를 얻어야	동의를 받아야
제19조제1항	~에 있어서의	~에서
제27조	2회에 한하여	두 차례에 한정하여
제39조제1항	수개	여러 개
제47조	~를 요하지	~가 필요하지
제53조제2항	승인을 얻어야	승인을 받아야
제62조	~에 한하여	~에 한정하여
제69조제4항	한차례에 한하여	한 차례만

## 나. 검토 의견

### 1)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

- 주민 접근성 강화: 현재 성북구의회는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. 이번 개정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주민의 의정 감시를 용이하게 하고 민주적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타 자치구 현황 반영: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개 의회가 본회의를 중계하고 있으며, 11개 의회는 본회의와 상임위 모두를 중계하고 있음.  
성북구의회 또한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## 2) 상위 법령과의 관계

- 「지방자치법」 제75조(회의의 공개) 및 제83조(회의규칙)에 따라 지방의회  
의 자율적인 규정 마련 권한 범위 내에 있으며, 법적 저촉 사항은 없는 것  
으로 검토됨.

## 3) 자구 준비의 적절성

- 법규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구민이 조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 
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임.

## 다. 추진 일정

- 2026년 7~8월 중 홈페이지 내 생방송 탭 개설 및 실시간 중계 시스템 구축
- 2026년 8월 이후 제320회 임시회부터 본격적인 실시간 중계 실시 예정

## 라. 종합의견

본 개정안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지방자치의 원리를 실현  
하려는 목적으로,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어  
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**「지방자치법」**

제75조(회의의 공개 등)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지방의회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83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4조(회의록)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, 주민에게 공개한다. 다만,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고**

**5. 토론요지 : 회의록 참고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소수의견 요지: 없음**

**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**